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 4. 22.
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김 광 수 의원 외 7인

나. 발의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09년 4월 1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9. 4. 20 제27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김광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복지시설의 이
용료를 현실화하며,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
용어를 정비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적용 복지시설의 명칭 명료화(안 제1조, 제2조)
-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의 이용자 비장애인으로 확대(안 제5조)
- 직업훈련시설의 비생활보호대상자 이용료 실비 징구(안 제6조)
- 상위 관련 법령 근거 조항 정비 및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를 위한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정비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『장애인복지법』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,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가. 적용 복지시설 명칭 명료화(안 제2조)

- 충주시 호암동과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각각 위치한 “충청북도 장애인 복지관”과 “충청북도 곰두리 체육관”의 명칭을 명기하여 조례의 명료성을 제고시켰음.

나.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이용대상 확대(안 제5조)

-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곰두리체육관 내 수영장의 경우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높였음.

다. 직업훈련시설의 일반인 이용료 실비 부담(안 제6조)

- “별표”에서 규정하였던 이용료를 “별표1”, “별표2”로 세분하여 “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”과 “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” 이용료를 규정하였고, 직업훈련 시 일반인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서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함.

□ 따라서,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조례의 명료성 제고와 일부시설에 대해 비장애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 이용료 현실화와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V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장애인 종합복지시설(이하 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”이라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복지시설”을 “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체육관”을 “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조사·연구 및”을 “조사·연구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행사 및”을 “행사와”로 한다.

제4조(업무와 기능) 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(이하 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.

제5조 본문 중 “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상의 수급자”로 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내 수영장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 본문 중 “별표 에서”를 “별표1과 별표2에서”로 하고, 별표1을

별지와 같이 하며,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신청자중”을 “신청자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부 또는”을 “전부나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의해 계속하여”를 “의하여 계속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에”를 “제4조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조금 및”을 “보조금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이용자 또는”을 “이용자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조사 및”을 “조사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조사 또는”을 “조사와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“취소 되었을”을 “취소되었을”로 하고, “부대시설·장비·비품 및 집기등은”을 “부대시설, 장비, 비품, 집기 등은”으로 한다

제4조제9호, 제7조제3항, 제10조제1항, 및 제11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조, 제7조, 제9 조, 제10조, 제11 조 본문 중 각 항의 번호와 조문은 각각 띄어 쓴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료(제6조 관련)

구분	기준	이용료		비고
		기초생활수급자	일반	
물리치료 (언어, 심리)	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 수가및약가	장애인복지법 제 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준함		
직업훈련	1인 1개월	무료	자체운영규정에 의한실비	
기타		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실비		

[별표2]

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 이용료(제6조 관련)

구분	기준	이용료		비고
		기초생활수급자	일반	
수영장	1회	무료	자체운영규정에 의한실비	
	월회원	"		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장애인복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시설(이하 "복지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</u> <u>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<u>제59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</u> <u>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위치) ① <u>복지시설은 충주시 호암동 산 751-7번지에 둔다.</u></p> <p>② <u>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위치) ① <u>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751-7번지에 둔다.</u></p> <p>② <u>충청북도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623-5번지에 둔다.</u></p>
<p>제4조(업무 및 기능) <u>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재활자립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<u>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<u>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	<p>제4조(업무와 기능) <u>충청북도장애인복지시설(이하 "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 모두와 같다.</u>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재활자립을 위한 조사·연구와 홍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<u>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장애인 <u>행사와</u>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</p> <p>9. <u>그 밖에</u>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
<p>제5조(이용대상) <u>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</u></p>	<p>제5조(이용대상) <u>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「국민기초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6조(이용료) 복지시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표</u>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위탁운영) ①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<u>신청자</u>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</p> <p>③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용료, 수탁자 부담금 <u>기타</u>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<u>전부</u>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 이</p>	<p><u>생활 보장법</u>」 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.</p> <p><u>다만,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내 수영장의 경우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이용료) 복지시설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별표1과 별표 2</u>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(위탁운영)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<u>신청자</u>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.</p> <p>③ 복지시설 운영비는 이용료, 수탁자 부담금 <u>그 밖에</u>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<u>전부나</u>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 이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내로 한다. 다만, 갱신에 <u>의해</u> 계속 <u>하여</u>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제 4조의 <u>규정에</u>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수탁자는 <u>보조금</u>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·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④수탁자가 제3항의 <u>규정에</u>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<u>이용자</u>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⑤수탁자가 복지시설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·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⑥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감독)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<u>기타</u>서류를 검사</p>	<p>내로 한다. 다만, 갱신에 <u>의하여</u> <u>계속</u> 위탁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<u>제4조에</u>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수탁자는 <u>보조금과</u>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·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수탁자가 <u>제3항에</u>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<u>이용자와</u>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수탁자가 복지시설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·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수탁자는 관련법령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감독)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<u>그 밖에</u> 서류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<u>조사</u>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도지사는 제1항의 <u>조사</u>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도지사는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.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<p>②제1항의 <u>규정에 의거</u>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된 <u>부대시설·장비·비품</u> 및 <u>집기</u>들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.</p>	<p>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<u>조사와</u>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도지사는 제1항의 <u>조사와</u>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위탁의 취소) ① 도지사는 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. <u>그 밖에</u>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<p>② <u>제1항에 따라</u> 위탁이 <u>취소되었을</u> 때에는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된 <u>부대시설, 장비, 비품, 집기</u>들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장애인복지법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다.

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80조(비용 수납) ①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시기관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.

②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면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34조(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)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장애인복지실시기관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국·공립병원, 보건소, 보건지소, 그 밖의 의료기관(이하 “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진료를 받게 하는 것
<이하 생략>

제43조(비용 수납) 보건복지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복지조치에 든 비용을 받으려면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해당 장애인이나 그 부양의무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